

의안번호	2211585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5. 11. 12.
추계번호	25B393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3조의2(도로의 피해보상) 신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포장파손에 의하여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도로관리청은 도로포장파손에 의하여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전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도로포장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감정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3조의2(도로의 피해보상)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 도로의 포장파손 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도로의 종류별 배상절차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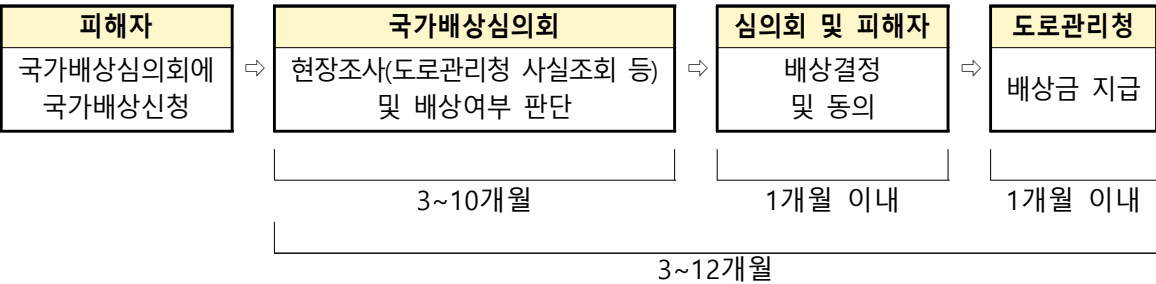
[표 1] 도로별 포장파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종류	관리청	손해배상절차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시 관내는 해당 시장)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한 배상결정 등)
고속국도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대행)	민간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특별·광역시도	특별·광역시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민간 배상책임보험 활용)를 통한 손해배상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도지사	
시·군·구도	시장·군수·구청장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절차가 이루어지는 고속국도 및 지자체 관리 도로와 달리 일반국도는 국가배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배상이 이루어지므로 손해배상 절차가 통상 3~12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 2]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포장파손에 의하여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전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국도의 포장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시에도 민간의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민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질 일반국도의 포장파손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배상액, 민간보험사에 지급될 수수료(손해사정비용, 배상검토비용 등)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도로포장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감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보다 증가할 수 있는 배상 청구건수 및 배상액의 규모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는 고속국도의 사례와 비교하여 일반국도의 손해배상의 경우 포장파손 발생건수 대비 배상청구건수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민간보험사 대비 국가배상심의 절차의 복잡성 등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일반국도의 피해배상이 민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배상 청구건수 및 배상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²⁾ 이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임

[표 3]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의 포장파손 관련 손해배상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연도	포장파손 발생건수	배상청구건수 (배상청구건수/ 포장파손 발생건수)	배상결정건수 (배상결정건수/ 배상청구건수)	배상금액
일반국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2021	47,025	208(0.4%)	130(62.5%)	235,356
	2022	17,704	163(0.9%)	75(46.0%)	78,398
	2023	33,857	1,388(4.1%)	335(24.1%)	262,088
	2024	34,173	1,319(3.9%)	161(12.2%)	79,061
고속국도 (민간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2021	4,285	1,218(28.4%)	1,218(100%)	1,939,910
	2022	4,509	1,737(38.5%)	1,737(100%)	3,497,095
	2023	5,801	2,580(44.5%)	2,580(100%)	4,437,733
	2024	4,992	3,375(67.6%)	3,375(100%)	4,152,989

자료: 국토교통부

- 1)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국도의 포장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계약을 위한 예산 산정 시, 피해자에게 지급될 배상금 외에 배상신청건당 약 15만원의 민간보험사의 수수료(안건검토 및 손해사정비용)를 책정하고 있음
- 2) 고속국도의 경우 2020년 민간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 이후 매년 배상청구건수 및 배상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